

청소업 종사자

Cleaners

사무실·상가 청소, 가정 청소, 호텔 하우스키핑, 병원 청소, 건물 관리

2025~26 회계연도 · FY2026 신고서 기준

공제의 3원칙 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

1. **본인이 직접 지출했고 회사에서 돌려받지 않았을 것** — 회사가 사주거나 비용을 환급(reimbursement)해 준 물건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.
2. **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을 것** — 업무용과 개인용을 함께 쓰는 물건은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공제합니다.
3. **증빙을 보관하고 있을 것** — 대부분의 경우 영수증이 필요합니다. 은행 명세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
소득 신고 시 주의

화장실 청소수당, 혹은 근무수당처럼 근무 여건을 보상하는 수당은 신고는 하되 그 자체로 공제가 생기지 않습니다. 세탁수당은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.

공제 가능한 항목 What you can claim

✓ 청소용품

업무를 위해 본인이 구입한 세제와 소모품. 개인적으로도 쓴다면 업무 사용분만.

✓ 청소 장비

청소기, 바닥 광택기 등. 개당 \$300 이하는 즉시 전액 공제, \$300을 넘으면 감가상각하고 집에서도 쓴다면 그 비율을 뺍니다.

✓ 장비 수리비

업무용 장비의 수리비.

✓ 보호 장비

고무장갑, 마스크, 보안경, 미끄럼 방지 신발, 앞치마, 손 소독제. 화학약품과 세균 노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용도.

✓ 보호용 안경

눈부심 방지 안경, 안전경, 고글. 업무 사용분만.

✓ 회사 로고 유니폼과 보호복의 세탁비

업무복만 세탁하면 1회 \$1, 개인 옷과 함께면 1회 50센트.

✓ 하루에 여러 현장을 도는 이동

이것이 청소업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. 고정된 근무지 없이 하루에 여러 현장을 계속 옮겨 다니는 경우, 현장 사이 이동뿐 아니라 집에서 첫 현장까지, 마지막 현장에서 집까지의 거리도 공제됩니다.

✓ 부피가 큰 장비를 옮기는 통근

고압 세척기, 바닥 스크러버처럼 차로만 옮길 수 있는 장비를 신고 다니고 현장에 보관 장소가 없는 경우.

✓ 주차비와 통행료

업무상 이동 중 발생한 것. 고정 근무지 주변 주차비는 제외됩니다.

✓ **전화 업무 사용분**
업무 사용 비율만큼.

✓ **업무 관련 교육**
현재 청소 업무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과정. 청소 시스템 워크숍 등.

✓ **응급처치 과정**
지정 담당자로서 교육이 요구되는 경우.

✓ **노조 회비**
전액 공제됩니다.

공제할 수 없는 항목 What you cannot claim

✗ **하루에 한 현장만 가는 경우의 통근**
매일 가는 현장이 달라지더라도, 하루에 한 곳만 가서 일하고 집으로 온다면 통근이며 공제되지 않습니다. 여러 현장을 순회하는 경우와 이 점이 다릅니다.

✗ **한 건물에 며칠씩 배정된 기간**
평소에는 여러 현장을 돌더라도, 한 건물에서 여러 날 연속으로 일하는 기간에는 그 이동이 통근이 됩니다.

✗ **검은 바지·운동복·티셔츠·운동화**
회사가 특정 색상을 요구해도 평상복이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. 로고가 있는 셔츠만 가능합니다.

✗ **일하다 더러워진 평상복의 세탁비**
옷 자체가 공제 대상이 아니면 세탁비도 공제되지 않습니다.

✗ **예방접종**
파상풍 주사, 독감 백신 등은 감염 위험이 있는 일이라도 개인 의료비로 봅니다.

✗ **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**
안전경 위에 쓰는 도수 안경은 별개로 공제되지 않습니다.

✗ **근무 중 식사와 간식**
식대 수당을 받아도 개인 비용입니다.

✗ **음악 스트리밍 구독과 재생 기기**
일하면서 듣더라도 수입을 얻는 데 필수적이지 않다고 봅니다.

✗ **운전면허와 벌금**
면허 취득·갱신비, 주차 위반과 과속 벌금 모두 공제 불가.

✗ **회사가 제공하거나 환급한 것**
청소용품, 장비, 보호구, 유니폼 등.

'순회 근무'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

집에서 첫 현장까지의 거리를 공제하려면 단순히 현장이 여러 곳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. 국세청은 이동 자체가 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인지, 고정된 근무지 없이 여러 현장이 연결되어 있는지, 집에 돌아가기 전에 정기적으로 두 곳 이상에서 일하는지, 현장 위치가 불확실한 경우가 잦은지, 계속되는 이동 때문에 회사가 교통수당을 지급하는지를 함께 봅니다. 하루에 여러 건물을 도는 사무실 청소는 여기에 해당하지만, 매일 한 곳에 가서 일하는 경우는 그 장소가 매번 달라도 해당하지 않습니다.

항목	기준
자동차 Car expenses	킬로미터당 88센트, 연간 최대 5,000km까지. 이 방법을 쓰면 연료비·정비비·보험료를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.
재택근무 Working from home	시간당 70센트 고정요율. 실제 재택 근무시간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, 추정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세탁 Laundry	업무복만 세탁한 경우 1회당 \$1, 개인 옷과 함께 세탁한 경우 1회당 50센트. 연간 \$150 이하면 영수증이 없어도 됩니다.
경비 합계 \$300 Total work expenses	업무 관련 경비 합계가 \$300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항목에 대해 영수증이 필요합니다.
물품 1개당 \$300 Single asset limit	개당 \$300 이하는 구입한 해에 전액 공제. \$300을 넘으면 사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(decline in value)합니다.
전화·인터넷 Phone and internet	업무 사용이 부수적이고 청구액이 \$50 이하면 별도 기록이 필요 없습니다. \$50을 넘으면 사용 내역이 필요합니다.
소액 경비 Small expenses	건당 \$10 이하는 연간 총 \$200까지 메모(날짜·판매처·금액·내용)로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.
보관 기간 Record retention	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. 감가상각 자산은 마지막으로 공제한 해로부터 5년입니다.

다음 연도(FY2027)에 달라지는 점

2026년 7월 1일부터 근로 관련 경비에 대해 최대 **\$1,000**의 표준공제(standard deduction)가 도입되어, 영수증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. FY2027 신고서부터 적용되며 이번 신고와는 무관합니다. 실제 경비가 \$1,000을 넘는 분은 지금처럼 실비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영수증을 계속 모아 주십시오. 또한 FY2027부터는 의류·세탁·수선·드라이클리닝 공제에 **모두 증빙이 필요합니다**. 세탁 \$150 이하 면제 규정은 이번 신고가 마지막입니다.

USQ CHARTERED ACCOUNTANTS

T. +61 3 9070 4790 · mark.kim@unitedsq.com · www.unitedsq.com
Waterman Collins Street, Level 2, 260 Collins Street · 44 Lakeview Drive, Caribbean Park, Scoresby

본 안내는 호주국세청(ATO)의 Cleaners 직업별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,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본인의 상황에 맞는 판단은 담당 회계사와 상의해 주십시오.

원문: <https://www.ato.gov.au/individuals-and-families/income-deductions-offsets-and-records/guides-for-occupations-and-industries/a-d/cleaners-income-and-work-related-deductions>